

선불통화권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

(주)텔레프리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선불통화권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피해를 보신 분은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0년 1월 20일

서울전파관리소장

1. 신고대상 : (주)텔레프리가 발행한 선불통화권 이용 피해자
2. 신고기한 : 2010. 03. 05.까지
3. 제출서류(자료)
 - 가. 이용자피해신고서 : 붙임 참조
 - 나. 선불통화권 실물(카드, 사용권 등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)
 - 다. 선불통화권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
 - ※ 공급계약서,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, 입금확인증 등
 - 라. 피해보상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(본인 명의)
4. 신고방법 : 우편 또는 직접 방문
5. 신고처 : ☎152-110 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-34
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
6. 보상계획
 - 가. 보상예정일 : 2010. 5월예정
 - 나. 보상금 산정방법
 - 신고접수 완료 후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
 - 피해총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개인별 보상금을 산정
 - 다. 보상의 방법 :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
7.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(☎(02)2680-174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붙임-

선불통화권 이용자 피해신고서

1. 선불전화카드 발행업체명 :

2. 신고자 인적사항

가. 성 명 :

나. 주민등록번호 :

다. 주 소 :

라. 연 락 처 : ☎ (휴대폰 :)

3. 보상금 지급통장(예금주와 신고자가 동일하여야 함)

가. 은행명 :

나. 예금주 :

다. 계좌번호 :

4. 선불통화권 내역

카드번호	액면가 또는 충전액	구매가	수량	아이디 및 비밀번호	잔액

※ 접수시 선불통화권 실물과 신고서, 구매입증자료(공급계약서, 결제금액 입금 통장 사본, 입금확인증), 보상금 입금받을 통장사본(본인명의)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충전방식 등 실물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“사용자등록 전화번호”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신고일자 년 월 일

신고인 : ①

서울전파관리소장 귀하

(보내실 곳 : 서울 구로구 궁동 산10-34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)